

# 특별공급 청약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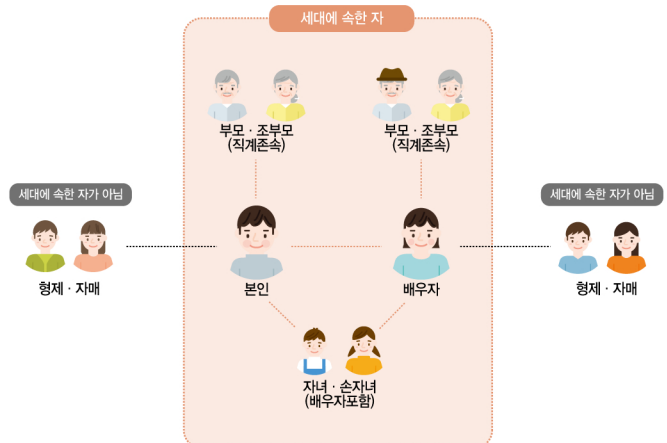
“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청약(한국부동산원 ‘청약Home’)을 원칙으로 합니다.”

구분		일반(기관추천)	다자녀가구	신혼부부	노부모부양	생애최초
청약 자격	주택소유	무주택세대구성원(청약자 및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 요건)				
	기본자격	해당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	미성년 자녀 3명 이상 (태아, 입양 포함)	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기준 충족하는 자	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	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 (세대원 포함) ※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 여부도 포함
청약자		무주택세대구성원			무주택세대주	
청약통장 종류		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(전용면적 85㎡ 이하)				
청약통장 요건		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※ 기관추천 :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제외			청약통장 24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	
청약가능 면적(전용)		59, 74, 84㎡	59, 74, 84, 114㎡	59, 74, 84㎡	59, 74, 84, 114㎡	59, 74, 84㎡
예비입주자		타입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%				
기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세대 내 동일한 세대구성원이 각각 중복 청약신청(특별공급+특별공급)할 경우 모두 부적격됩니다. (※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공급한정)</li> <li>-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봅니다.(단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)</li> <li>-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자를 포함하여 무작위(기관추천,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, 생애최초)로 동일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 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</li> <li>- 예비입주자 선정 : 같은 주택형 다른 공급유형의 낙첨자들과 함께 추첨합니다.</li> <li>- 일반(기관추천)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- 소형 · 저가주택 등 1호 이상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.</li> <li>- 분양권 등도 주택 소유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또는 청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				

## 무주택세대구성원

-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주세대(세대에 속한 자)
-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“세대구성원”이라 함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입니다.
  - 주택공급신청자
  -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  -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및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  -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- \*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

## 주택청약시 세대원 판단기준



※청약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은 '입주자모집공고일' 입니다